# 연구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발전연구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원 산하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문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및 역할)** ① 연구소는 인준연구소와 부설연구소로 구분한다.

② 연구소는 본교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한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본교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맞는 특정 주제의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③ 인준연구소는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및 심의절차에 따라 부설연구소로 승격할 수 있다.

④ 본교는 ①항의 구분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연구소를 둔다.

**제3조 (연구소의 설치)** ① 인준연구소 설치절차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인준연구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인준연구소 신설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미래발전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미래발전연구원장은 미래발전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준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발기인에는 관련 전문분야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본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3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부설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 절차는 인준연구소와 같다.

1. 대학의 발전방향이나 대외경쟁력 확보 등 정책적인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2. 인준연구소가 2년 이상 연속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취득하고 부설연구소로의 승격을 신청한 경우

③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준연구소는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설립절차를 따르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제3조 ①항에 의거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평가)** ① 미래발전연구원 운영위원회는 연구소를 평가지표(서식 2)에 따라 매 학년도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2월에 평가한다.

② 평가 결과에 따라 인준연구소는 본 규정 제2조 ③항에 의거하여 부설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연구소가 2년 연속 60점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본 규정 제10조의 절차를 거쳐 폐

소할 수 있다.

④ 평가연도에 설치된 연구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차기연도부터 평가한다.

**제5조 (연구소장)**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소장, 간사(총무)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미래발전연구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의 부소장, 간사(총무)는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04.30.>

**제5조의 2 (연구소 운영위원회)** ① 각 연구소에는 미래발전연구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 및 본교 교원 3인 이상으로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에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 (연구위원 및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전임(공동)연구원과 연구조교(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전임(공동)연구원은 연구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연구조교(행정조교)는 연구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과 미래발전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대학교 부설연구소 소속의 연구원 및 연구조교(행정조교)의 연구 참여 경력은 인사담당 행정부서에서 관리하며 인준연구소는 연구소에서 자체 관리한다.

④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보고)** ① 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은 미래발전연구원장 요청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평가(서식2)를 위한 자료(다음해 1월말까지)
2. 차기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다음해 1월말까지)
3.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다음해 2월말까지)
4. 연구소는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업적이 있을 경우, 미래발전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 ① 각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성결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② 각 연구소의 재정은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단,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인준연구소의 재정은 사업기간 동안 해당 사업비로 충당한다.

③ 대학교는 각 연구소 또는 연구원이 외부로부터 수혜하는 연구비 중에서 일정율의 간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발전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통폐합 및 폐소)** ① 연구소가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구소를 통폐합 및 폐소 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구소가 2년 연속 60점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3. 각종 비리, 중대한 부정 등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대학교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서식3>에 따라 폐소를 신청한 경우
5. 기타 폐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연구소 통폐합 및 폐소는 미래발전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연구소는 통폐합 또는 폐소 시 공간 및 기자재 등 그 재산 일체를 본교에 즉시 귀속시켜야 한다.

④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인준연구소는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준연구소 평가 결과와 미래발전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연구소로 존속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제8조)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서식 1, 서식 2)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 규정에 의거 「인준연구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 2,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별표1, 서식1, 서식2, 서식3)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서식2)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구소 현황

| 구분 | 연구소명 | 비고 |
|---|---|---|
| 부설연구소 | 다문화평화연구소 | 정책연구소 |
| | 영암신학사상연구소 | 정책연구소 |
| | 문화프레임빅데이터연구소 | |
| 인준연구소 | A.I경영기술연구소 | |
| | 융합예술과학연구소 | |
| | 4차산업혁명기술연구소 | |
| | 웰라이프 헬스케어 연구소 | |
| | 사이버중독상담연구소 | |
| | E-XR 융합기술연구소 | |
| | 인공지능융합연구소 | |

<서식 1>

# 서식1 인준연구소 신설 신청서

| | | | | | | |
|---|---|---|---|---|---|---|
| 신청자 | 성명(소속학과) | | | | | |
| | 연락처(연구실, 휴대전화) | | | | | |
| 신청 연구소 | 연구소명 | | | | | |
| | 연구소 개소 희망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 | | | |
| 연구소 개요 | *※설립배경,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기술* | | | | | |
| 발기인 대표 | 성명 | 소속학부(과) | | 직위 | 전공분야 | 연락처 |
| | | | | | | |
| 발기인 명부 | 성명 | 소속학부(과) | | 직위 | 전공분야 |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직 | | | | | | |
| 기대효과 |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
| 운영방침 및 규정 | *※회칙 등* | | | | | |

| | | | | | | | |
|---|---|---|---|---|---|---|---|
| 연구소 추진 일정 | 세부추진내용 | 연구추진일정 (월별) | | | | | 비고 |
| | | *예시)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집행 계획 | 항목 | | 예산액(원) | 산출근거 | 비율 | 비고 |
| | *예시) 인건비* | | | | | |
| | 연구소 활동 경비 | *회의비* | | | | |
| | | *문헌비* | | | | |
| | | *재료비* | | | | |
| | | *인쇄비* |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 | | 100% | |

202 년 월 일

신청자: (인)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 서식2 연구소 평가표

| 공통지표(40%) | | | |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비고 |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가. 연구소 설립목표에 근거한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br>- 연구소 설립목표에 따라 사업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br>- 연구소의 사업계획과 사업성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 10 | 정성 |
| 연구소 운영의 내실화 | 가. 연구소 운영의 내실화, 활성화 노력: 연구소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여부 등<br>- 연구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연구소의 운영방향, 사업내용 협의 등이 활발한지)<br>- 홈페이지구축, 자료업데이트 등의 연구소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는가(부설연구소 평가에 한함) | 10 | |
| 대학발전기여도:<br>3-way (택1)<br>① 연구발전 20점<br>② 교육발전 20점<br>③ 연구발전 10점<br>+ 교육발전 10점 | 가. 대학 연구발전성과 연계성: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대학차원의 중장기 연구발전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 20* | |
| | 나. 대학 교육발전성과 연계성: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대학차원의 중장기 교육발전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 20* | |
| 합계 | | 40 | |

| 개별지표(60%) | | | | |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연구 활동 | 교내 연구과제 수 | 건당 3점 | 최대 60점 | 정량 |
| | 교내 연구비 수혜 금액 | 합계 100만원당 1점 (예: 150만원 1점) | | |
| | 연구논문, 저서, 연주/발표 등 | 건당 3점 | | |
| | 외부 연구과제 수 | 건당 5점 | | |
| | 외부 연구비 수혜 금액 | 합계 500만원당 4점 (예: 800만원 4점) | | |
| | 간접비 규모 (총 간접비 납부액) | 합계 100만원당 2점<br>(간접비 비율 10% 미만 제외) | | |
| 학술 활동 |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 국제 건당 10점, 국내 건당 5점 | | |
| | 세미나 및 워크샵(포럼) 등 | 건당 3점, 년 3회 까지 인정 | | |
| | 보고서 등(연구활동 실적과 중복 인정 불가) | 건당 3점, 년 2회 까지 인정 | | |
| | 학술지 발간(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이상) | 60점 | | |
| 합계 | | | 60 | |
| 총점 | | | 100 | |

*** 연구활동과 학술활동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인정 가능함 (보고서 등은 제외)**

*** 연구논문, 저서, 연주/발표 등은 전임교원 교내 연구과제 실적 기준을 적용함**

*** 연구활동 및 학술활동의 주제가 연구소 연구주제와 부합할 경우 인정**

1. 연구비 수주실적 인정범위: 입금일 기준으로 산정함
   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통합 관리를 실시한 수주실적
   나. 연구소 또는 연구소 소속 위원의 수주금액
2. 학술대회 개최실적 인정범위
   가. 국제학술대회: 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외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를 인정함. 단, 국제학술대회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의 연구자 5인 이상 발표, 외국국적 발표자의 국적은 최소 3개국 이상이어야 함
   나. 국내학술대회: 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로서 4인 이상의 논문발표자가 있어야 하며, 그 중 2인 이상이 외부 초청발표자일 경우에만 인정함
   다. 기타 학술행사: 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공식적인 대외 공고 후, 소규모 세미나,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술행사
3. 연구소 지원으로 수행된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의 경우, 연구 활동·학술 활동 평가내용에 준하는 활동은 위 평가 기준으로 인정함

서식3

# 연구소 폐소 신청서

| | | | |
|---|---|---|---|
| 연구소명 | | | |
| 연구소 폐소 희망일 | 20 년 월 일 | | |
| 연구소장 | 소 속 | 성 명 | 직 급 |
| | | | |
| 소속 연구원 명단 | | | |
| 폐소 사유 | | | |

별첨 1. 연구소 운영위원회 폐소 동의서 1부.
2. 연구소 반납 기자재 명부 1부.

위와 같은 사유로 연구소 폐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소장 : (인)

**미래발전연구원장 귀하**